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735

발의연월일: 2021. 12. 8.

발 의 자:조명희·추경호·홍문표

박덕흠 · 성일종 · 하영제

김성원 · 조경태 · 김석기

박 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받은 사람을 포함하여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병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형법」 제41조에서 사형을 징역이나 금고와 구별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서도 징역 또는 금고를 유기와 무기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해석상의 논쟁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음.

이에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외되는 대상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병적 제적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항).

법률 제 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를 "사형, 무기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병역의무) ① ~ ③ (생	제3조(병역의무) ① ~ ③ (현행
략)	과 같음)
④ 병역의무자로서 <u>6년 이상의</u>	④사형, 무기
징역 또는 금고의 형(刑)을 선	또는 6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兵籍)에서 제적	
된다.	